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3회 임시회(2022. 3.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2-32
----------	-------

2022. 3. 15.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서종수 의원 외 7명
- 나. 제 안 일 : 2022. 3. 7
- 다. 회 부 일 : 2022. 3. 8.

2.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
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
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
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3항)
 - “음주청정지역” → “금주구역”
- 나. 금주구역의 추가 신설 (안 제4조제1항제2호)
 -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 다.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신설 (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4조제3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2. 3. 8.~ 3. 13.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조문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음주청정지역이라는 임의의 구역을 지정하여 그동안 금주구역에서 초래할 수 있는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 행위 방지를 위한 음주제한 계도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따라 효과적인 금주구역 운영 및 정착을 위한 금주구역에 대한 정의 및 지정을 추가하고 금주구역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여 음주폐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됨.
- 안 제2조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주구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안 제4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단지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인 어린이놀이터에서의 음주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금주구역을 지정하였음.
- 안 제10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금주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판단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2021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금주구역 지정 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동안 자치사무로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였던 ‘음주청정지

역’ 지정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에서 음주규제를 가능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 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개정안이 제안하고 있는 금주구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주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징수는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그동안 방역조치 차원에서의 노상음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활동으로 판단되어,
-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 지정 음주청정지역은 관내 3개소이며, 마포구 지정 음주청정지역은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표 1.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중 마포구 지정장소 및 범위]¹⁾

번호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면적(m ²)
1	근린공원	월드컵	마포구 상암동 48	전 역 (2,284,085)
2	근린공원	경의선숲길	마포구 새창로 37	전 역 (101,668)
3	문화공원	문화비축기지	마포구 증산로 87	전 역 (101,510)

[표 2. 마포구 도시공원 음주청정지역 공원 현황]

번호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면적(m ²)
1	근린공원	상암공원	상암동 1683	161,152.6
2	근린공원	성산공원	상암동 산 11-1 등 39필지	103,961.7
3	근린공원	와우공원	창동 3-231 등 59필지	73,590.0
4	근린공원	부엉이공원	상암동 1735	17,640.3
5	근린공원	구룡공원	상암동 1583	14,286.5
6	근린공원	매봉산공원	상암동 1631	13,136.7
7	근린공원	쌍룡산공원	아현동 768	5,791.2
8	어린이공원	삼개어린이공원	도회동 555-1	3,027.7

1) ※출처 :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6호)

[관 계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